

---

##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4차 홍보계획

---



#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홍보 계획(4차)

## □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정의

- 농업·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, 농자재, 시범요인 등을 실제로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별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총칭함.

## □ 관련근거

- 농촌진흥법
-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·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(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)

## □ 세부추진일정

- 사업홍보 및 신청: 2020. 4. 13(월)~4. 20(월)
  - 사업홍보: 읍·면·동사무소, 농협, 도청,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등
  - 신청방법: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직접 방문 신청
- 서류 및 현지심사 : 2020. 4. 13(월)~4. 22(수)
  - 시범사업 신청 즉시 서류 및 현지심사 추진
-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: 2020. 4. 24(예정)

## □ 시범사업 추가모집 현황(4차)

구 분	부서별	사업량	사업비(백만 원)		
			계	보조	자부담
합 계	2개사업		240.2	165	75.2
감귤지도	감귤 저비용 생력화 거점과원 육성	3.4ha	233	160	73
	감귤류 품종 갱신 대표육성시범	1	7.2	5	2.2

## □ 주요 사업내용

사업명	사업내용(지원내역)
감귤 저비용 생력화 거점과원 육성	○ 감귤과원 구조개선 및 재배환경 개선 - 성목이식, 점적관수, 집수조, 병해충 자동방제시설, 파풍망, 용수시설 등
감귤류 품종 갱신 대표 육성 시범	○ 묘목: 로열티 문제가 없는 우량품종 - 묘목, 식재용 포트, 상토, 관수시설 등 대표육성 자재 지원

## □ 시범사업 신청방법

-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단체 등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직접 방문 시범사업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
※ 신청양식은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<별표> 활용

### < 신청서류 >

#### ○ 기본서류

- 사업신청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
농지원부(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)
-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이력 확인 내역
- 감귤원 식재년도 확인서, 납세증명서

#### ○ 추가서류

- 가족관계증명서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장인)
- 토지대장,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 관련사업)
- 졸업증명서(농과계학교 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
-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
- 농업인교육 이수확인서(최근 3년간), 농업인상 수상 사본  
(농업기술원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귤대학 등)

### ○ 신청대상자: 농업인, 농업인단체, 영농조합법인 등 세부사업별 대상자

### < 사업 대상 제외자 >

-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하거나,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회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(배우자 포함).
-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(시범사업 신청자 기준)
  - 농협 상근임직원, 공무원, 교사, 공기업,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
  -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

< 사업 대상 제외자 >

-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
  - ※ 단,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
-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
- 감귤분야사업: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(다만, 신규 조성한 다음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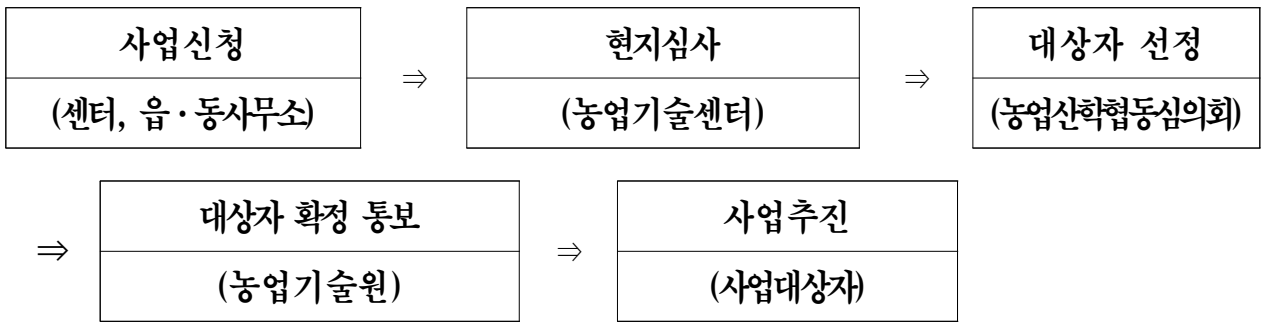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: 세부사업 지침에 따름

○ 사업기간: 2020. 4~ 12월

□ 대상자 선정 기준
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-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, 영농법인, 생산자단체,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자
  - 심사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
-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, 보조사업 지원여부 등
  -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(단,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)하여 아래의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
  -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1차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, 신청자 부족에 따른 2차 선정 심의회 시 후순위로 배정
  -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3천만 원을 초과하여 1회 이상 지원받은 자,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2억 원 이상 보조를 받은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당해년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(단, 계속사업인 경우 제외)
- 국비 매뉴얼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동일사업 신청자는 사업 대상자에게 배제
-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하여 사업대상 요건, 선정기준 이행
- 기타 사업별 필요한 항목을 배점 기준으로 설정 하여 대상자 선정

□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



(문 의 :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현광철, 760-7831)

## □ 목 적

- 최근 감귤소득은 맛과 품질에 의해 결정된 고품질생산 기술보급 필요
- 감귤원 과원구조개선을 통한 타이벡 토양피복재배 효과 극대화
- 자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고령화로 인한 저비용 생력화 기술보급

## □ 사업신청 대상 및 포장조건

- 본 사업은 지역농협 공동 추진사업으로 지역농협(조합장)은 과원 구조개선을 통한 고품질 감귤 생산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농업인을 참여 농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농가 개인으로 신청 불가능하다.
- 과원구조개선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성목이식, 표준과원 조성 매뉴얼에 따라 과원여건에 맞춰 추진하며, 지역농협에서는 신청농가별로 필요한 사업을 사전 조사하여 신청한다.
- 포장조건은 과원구조개선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다.

### ① [성목이식 과원구조개선]

- 다품종 혼식, 줄 및 열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감귤원
- 전년도에 착과량이 적어 수세가 강한 우량한 감귤나무가 식재 된 감귤원
- 과원내 빗물이 이웃 과원으로 유입이 안되고 배수가 잘 되는 감귤원
- ※ 과원 내 빗물이 이웃 과원으로 유입이 우려될 시 합의서 제출
- 농업용수, 전기시설(5kw 이상) 등 물주는 시설이 갖춰진 포장이어야 함

### ② [표준과원 과원구조개선]

- 1/2 간벌포장 또는 현재 나무 줄 간격이 4m 이상이며, 줄이 잘맞는 감귤원
- ※ 나무 줄간격이 평균 4m 미만인 포장과 4m 이상이라도 밀식된 포장은 제외
- 사업당해년도 착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효과를 높일수 있는 감귤원
- 농업용수, 전기시설(5kw 이상) 등 농업기반조성 갖춰져 있으며, 빗물을 집수조 또는 배수 시설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포장

③ [공통사항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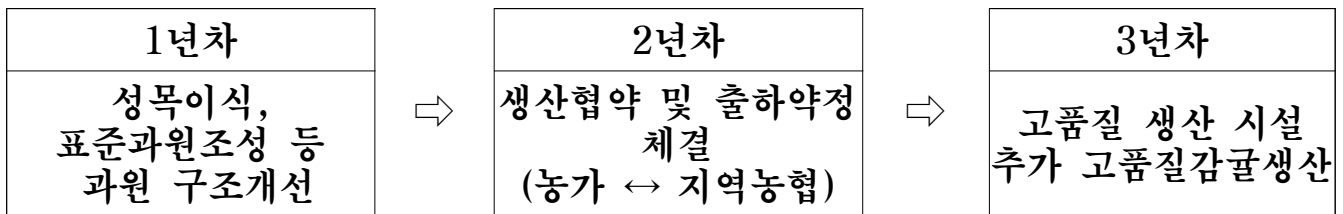
-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은 제외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0. 4. ~ 12월(사업은 6월까지 완료)
- 사업규모: 3.4ha 내외
  - 농가별 최대 0.5ha 범위 신청
  - ※ 신청대상: 4개농협(남원, 효돈, 중문, 위미농협)
- 사업비: 233,000천원(보조 160,000, 자부담 73,000)
  - 부담비율: 보조 70%, 자부담 30%
- 사업내용: 고품질 감귤생산 과원 구조개선 및 관리 자동화 생력화 시설
  - 과원 구조 개선: 성목이식, 표준과원 조성, 집수조 설치, 점적관수 등
  - 재배 환경 개선: 병해충 자동 방제시설, 방풍수 정비, 용수시설 등

□ 시범요인

- 감귤원 구조개선 기술을 투입 단지화하고 브랜드 감귤 공동 출하 등 고품질 생산 및 유통모델 정립



□ 기대효과

-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및 공동출하 등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교섭력 강화
- 제주 브랜드감귤 이미지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  - 브랜드감귤 생산비율: 인근농가대비 78%증, 소득 260% 증



## □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

### 가. 사업대상자 선정

- 지역농협(조합장)은 “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지침”에 의거 사업대상자 접수후 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제출 한다
-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농협(조합장)에서 추천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후 이상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하여 사업 대상 농가를 확정한다.

### 나. 사업추진요령

-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- 사업 대상농가는 사업 추진 후 빗물처리에 따른 문제발생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,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되는 사업비는 농가 부담으로 사업 추진
- 사업대상자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추진할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.

## □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

- 사업별 항목(100점)
  - 사업계획 타당성: 40점(사업계획 물량 적정 40점, 사업계획 물량 부족 0점)
  - 사업예정지 농가 참여여부: 30점(마을단위 농가참여 100%, 마을단위 농가참여 70%, 마을단위 농가참여 50%이하)
  - 사업추진의지(사업농가 대상 사전 사업계획 설명 및 추진협의회 결성 여부) : 30점(사업계획설명, 추진협의회 결성 30점, 사업계획 설명 10점, 해당사항 없음 0점)

「별지 1호 서식」

## 시범사업 신청서 (농협 ⇒ 센터 신청용)

사 업 명		감귤 저비용 생력화 거점 과원 육성					
신 청 자	기관명						
	참여농가수 (명)	사업량 (ha)	협의회 개 최	일시			
					장소		
성 명 (대표농가)		휴대폰					
<p>본인은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 22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) 및 제24조의2(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)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·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상기와 같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추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20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추 천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협 조합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1.2em;">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</p>			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 농가 현황 1부, 개인별 시범사업 신청서, 지적도(사업예정지 표시) 추진계획 설명 및 협의회 결성 관련 회의록 1부(사진첨부)</li> </ul>							





(문 의 : 서귀포농업기술센터 김동현, 760-7833)

### 목 적

- 생산성이 낮은 감귤원 또는 품종을 새로운 우량품종으로 대체
- 대표육성을 통한 미수익 기간을 단축하는 품종갱신 기술 시범 보급

### 사업대상

- 하우스감귤 환상박피 피해와 만감류 자근피해가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포장
- 현재 품종의 노후화로 새로운 품종 갱신 희망 농가
- 시범포장을 현장교육장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농가
- 시설하우스 내에서 육묘할 수 있는 일정규모(묘목 1개당 1m<sup>2</sup>내외) 이상의 면적이 확보 가능한 농가
-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한 감귤원은 제외

###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0. 4. ~ 12월(사업은 6월까지 완료)
- 사업규모: 1개소
- 사업비: 7,200천원(보조 5,000, 자부담 2,200)
- 사업내용
  - 품 종: 로열티 문제가 없는 우량 품종
  - 지원내역: 묘목, 식재용 포트, 상토, 잡초방제 자재, 관수시설 등 선택

### 시범요인

- 자가로 대표를 조기에 육성하여 미수익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
  - 1년차) 분이식 또는 토경 식재 → 2년차) 대표육성 → 3년차) 본포정식(이식)
  - 4년차 수확

### 기대효과

- 기존 과수원 품종갱신 시 미수익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착과는 물론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 소득 향상

## □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

### 가. 사업대상자 및 포장여건

- 자근피해, 고접수, 노목, 조생온주 가온하우스 환상박피 피해 등으로 인해 품질 및 생산성이 낮은 기존 품종을 제거 개식을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
-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

### 나. 사업추진요령

-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
- 사업 추진은 개소당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초과되는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
- 대표 육성 후 정식할 실제 포장지번을 명기하여 사업신청 및 추진
- 육묘는 시설하우스 일정면적(묘목 1개당 1m<sup>2</sup>내외)을 확보한 후 묘목관리를 해야 함

## □ 시범사업 선정 기준 배점표

- 공통항목(50점):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침 적용
- 개별항목(50점)
  - 사업면적(15): 시설 1,980m<sup>2</sup>이상(15), 1,979~1,650m<sup>2</sup>(10), 1,649~1,320m<sup>2</sup>(5), 1,319m<sup>2</sup>이하(0)
  - 나무상태(15): 나무상태(자근발생, 고접수, 노목, 품종불량 등) 아주 나쁨(15), 다소 나쁨(10), 보통(5), 좋음(0)
  - 나무수령(10): 만감류) 15년생 이상(10), 10~15년생 미만(7), 10년생 미만(5), 온주류) 35년생 이상(10), 25~35년생 미만(7), 25년생 미만(5)
  - 기반시설(10): 자동개폐기, 열풍기, 보온커튼 등 시설이 3종 이상(10), 2종(5), 1종(3), 없음(0)

## 시범사업 신청서

사 업 명					신청 면적	㎡
신 청 자	생 산 자 단 체 명	(단체인 경우 기재)				
	성 명 (대표자)	생년월일		자택번호		
				휴 대 폰		
	배 우 자	생년월일		자택번호		
				휴 대 폰		
	도로명주소	(기존주소 : )				
	영농경력	년	최종학력		단체활동	
작 목			재배면적			
신 청 내 용	사업예정지 지번	읍·면·동 리 번지		사업예정지 면 적	㎡	
	사 업 비 (천원)	계	보 조		자 답	
<p>본인은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제 22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 등) 및 제24조의2(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),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,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·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. □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기와 같이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. 2020년 월 일 신 청 자 : (인)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</p>						
<p>※ 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본서류 :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농지원부,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</li> <li>- 추가서류 : 근로소득확인서(직장인),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(건물 등 시설관련사업) 졸업증명서(농과계 학교졸업시),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확인서, 교육이수확인서(농업기술원(센터), 농업마이스터대학, 감골대학) 영농승계확인서</li> </ul>						





## 시범사업장 농업인 교육장 활용 동의서

동의자 인적사항

사업자(단체)		사업자번호 (생년월일)	
대표자(성명)		전화번호	
신청사업명			

위 본인은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 시 사업장을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

2020. . .

동 의 자 :

(날인,서명)

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 귀하



## 작성 시 주의사항

\* 본인 소유 분은 100%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직계존속이 영농계획서와 영농승계 확인서에서 승계하기로 확약한 면적은 50%만 영농기반으로 인정

(단,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에 확약한 면적의 50%는 영농승계(상속, 증여)가 이뤄져야 함)

\* (예시) 아버지의 영농기반 면적이 4ha이고 아들에게 1ha를 승계할 것을 확약한 경우 영농기반 평가시 0.5ha를 영농기반으로 인정하고,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에 0.5ha에 대한 영농승계가 이루어야함(나머지, 0.5ha는 편입 후 후계농산업기능요원 종료 전 6개월 전까지 이뤄져야 함)